



제 628호 2024. 9. 26 (목)

입법예고

제2024-4241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616
제2024-4263호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623

조 례

제2098호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39630
제2099호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632
제2100호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39636
제2101호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643
제2102호	김해시 입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645

고 시

제2024-301호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39646
제2024-303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8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9647

공 고

제2024-4288호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	39651
제2024-4302호	도시계획도로(대로3-1-13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보상계획 열람 · 공고	39653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2024. 12. 31.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일몰되는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3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 용어 정비(안 제15조)
 - 감면 → 특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재산소득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시세팀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 전 화 : 055-330-3492
- 팩 스 : 055-722-0315
- E-mail : gmson6053@korea.kr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조례안 조문 의견제출 내용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2024. 12. 31.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일몰되는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3조)
 -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 용어 정비(안 제15조)
 - 감면 → 특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 입법예고 시 접수 의견 :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 .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면규정”을 “특례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제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 2027년 12월 31일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제15조(중복 특례의 배제) -----

----- 특례규정 -----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4. 12. 31.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조문·조항을 현행화하고 정비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3조 제2항)
- 나. 위원회 위촉직 구성 정비(안 제8조 제2항)
- 다.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11조)
- 라. 위원회 구성 협의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 마. 보조금 지출 근거 마련(안 제28조)
- 바. 상위법 당연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8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 전 화 : 055-330-3315
- 팩 스 : 055-722-1808
- E-mail : feelsue1025@korea.kr

마. 기타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정주(전화: 055-330-33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
- 조문·조항을 현행화하고 정비함으로써 조례 기준 명확화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3조 제2항)
- 위원회 위촉직 구성 정비(안 제8조 제2항)
-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11조)
- 위원회 구성 협의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 보조금 지출 근거 마련(안 제28조)
- 상위법 당연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임
-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24. 9. 26. ~ 10. 16.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10. 29.(예정)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업무”를 “예산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 각 부서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

려는 경우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을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구성 등) ① (생 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과 <u>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u>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p> <p>1. <u>김해시의회 의원 2명</u></p> <p>2. <u>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여성분 야 대표 3명</u></p> <p>3. · 4. (생 략)</p> <p>③ (생 략)</p> <p>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신 설></p> <p>1. ~ 5. (생 략)</p> <p><신 설></p>	<p>제8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예산업무</u> ----- ----- ----- ----- -----</p> <p>1. <u>김해시의회 의원</u></p> <p>2. <u>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의 해촉) ----- ----- -----</p> <p>1. <u>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p> <p>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21조의2(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 <u>각 부서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려는 경우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p>

제28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④ (생략)

제3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8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 개
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9년 12월 31
일-----.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홍태용

2024년 9월 26일

김해시 조례 제2098호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① 김해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할 현수막

4. 지방보조사업자가 김해시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현수막

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제1조 및 제2조)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제5조)
- 재정 지원(제6조)
- 협력체계 구축(제7조)
- 포상(제8조)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9월 26일

김해시 조례 제2099호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관외 이용이 가능하며, 복귀 시 별도 접수하여 김해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관외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제1호”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용”을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사람에게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이동지원센터 (☎010-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교통약자콜택시 관외 이용 제한을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관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관외 이용 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제15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3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8조)
-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9월 26일

김해시 조례 제2100호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가구주택
 - 다. 아파트
 - 라. 연립주택
 - 마. 다세대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로 한다.

1. 혼인신고일부터 7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2. 부부 모두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일 것
3.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4. 김해시에 소재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기준) ① 지원금액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대리수령 가능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정대리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접수 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 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신청인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데 아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함을 확인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신청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신청인과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합니다.	
2. 무주택 여부	신청인과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주택전월세 자금대출	신청인과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합니다.	
4. 대상주택 전월세여부	신청인과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1. 신청인 동의

신청인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 배우자 동의

배우자는 신청인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대해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관련 정보의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김해시장 귀하

◇ 개정이유

- 우리 시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사태가 접수되고 있으며,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세가율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음.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있어 기존 조례의 ‘전세자금’ 용어는 대상자의 지원사항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지원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과 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의 범위와 제외대상을 규정(제5조)
-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신청 및 지원절차,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9조)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홍태웅

2024년 9월 26일

김해시 조례 제2101호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3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0.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을 “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경상남도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8조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을 “법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제7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를 “법 제9조”로, “보호·관리가”를 “사육·관리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43조”로,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제5조에서 정하는”을 “제6조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제6조에 따른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1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행규칙 제21”을 “시행규칙 제26”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2호”를 “법 제43조제2호”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중성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술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를 정해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활동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공 급식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내 인용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 및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제2조,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소유자등’,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 정의 규정(제2조)
- 동물복지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규정 신설(제3조의2)
- 길고양이 관리 등 규정 신설(제16조 및 제16조의2)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 관련 규정
 -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 등을 위한 사항 규정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9월 26일

김해시 조례 제2102호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임산부가”를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복지 증진”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을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영유아 가정”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전용주차구역”을 각각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를 “공공시설에서”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을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임산부가”를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산부 자동차”를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로,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를 “임산부 또는 영유아”로,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를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활용도가 낮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승자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여 가족 배려 주차 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산 극복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 변경(제명)
 -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김해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용대상 확대 및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
 - 이용대상 확대 : 임산부 → 임산부·영유아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삭제(현행 제5조 삭제)
- 위반차량에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제재방안이 없어 이동주차를 ‘권고’하도록 내용을 변경(제7조)
- 일부 미비점 보완(현행 제8조 삭제)

김해시 고시 제2024-301호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김해시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 시행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9. 26.

김 해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
2. 사업의 목적 : 생림면 생활SOC복합화를 통한 교육·문화·복지·체육 등 인프라 구축으로 거점기능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비 : 4,781백만원(국비 2,800, 도비 360, 시비 1,621)
4. 주요 사업내용
 - 위치 : 경상남도 생림면 봉림리 641번지 일원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 생활SOC복합화(동행센터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연계)
 - 지역역량강화 :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방안 수립
5.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5년
7. 기타문의사항 :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설과 농촌개발팀(055-330-37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8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김 해 시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97-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8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부 정비사업
-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		금회시행			비고 (최초결정일)
	연장(m)	폭(m)	연장(m)	폭(m)	면적(㎡)	
중로1-98	9,996	21~43	314	0~8	1,999	경상남도 고시 제2008-531호 (2008.10.3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케이인더스트리(주) 대표 정태영
 - 주소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03-11
-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5. 10.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 실시계획 신청 사유
: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증가로 중로1-98호선의 일부구간을 확장(가·감속차로 설치)하여 증가한 교통량을 해소 하고자함.
-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6)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 리		권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146- 6	임	54	54	국(국토교통부)	-				
2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97-1	전	3	3	이케***스트리(주)	경남 김해시 장** 금**로 **1번길 20				
3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97-4	전	117	117	국(기획재정부)	-				
4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98-3	임	7	7	한*학	-				미등기
5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98-5	도	11	11	한*학	-				미등기
6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0-3	도	86	86	이케***스트리(주)	경남 김해시 장** 금**로 **1번길 20				
7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0-16	답	30	30	국(국토교통부)	-				
8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8	전	29	29	국(기획재정부)	-				
9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8-4	전	94	94	국(기획재정부)	-				
10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8-6	전	20	20	국(기획재정부)	-				
1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8-7	전	7	7	국(기획재정부)	-				
12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8-8	전	17	17	국(기획재정부)	-				
13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8-9	전	26	26	국(기획재정부)	-				
14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8-12	도	3	3	국(기획재정부)	-				
15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8-13	도	14	14	국(기획재정부)	-				
16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9-7	답	91	91	이케***스트리(주)	경남 김해시 장** 금**로 **1번길 20				
17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9-12	도	4	4	국(국토교통부)	-				
18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09-13	답	187	187	국(국토교통부)	-				
19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0-7	전	35	35	이케***스트리(주)	경남 김해시 장** 금**로 **1번길 20				
20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0-8	대	5	5	이*곤	밀양군 북부면 사*리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0-11	전	57	57	이케***스트리(주)	경남 김해시 장** 금**로 **1번길 20				
22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0-17	전	228	1	코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 구 테헤란로 **8, ** 층 (대*동, ***빌딩)				
23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0-18	전	232	232	국(국토교통부)	-				
24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0-19	대	66	66	국(국토교통부)	-				
25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1	전	31	31	최*익	마산부 **동 1*8				
26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1-1	전	11	11	국(국토교통부)	-				
27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1	도	4	4	최*익	마산부 **동 1*8				
28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4	도	6	6	국(국토교통부)	-				
29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5	답	3	3	정*영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1*, *03동 *01호(부*동, 석 봉마을 **아파트)				
30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6	답	8	8	국(국토교통부)	-				
3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10	도	9	9	최*익	마산부 **동 1*8				
32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11	도	15	15	최*익	마산부 **동 1*8				
33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12	도	86	86	국(국토교통부)	-				
34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14	답	92	92	이케***스트리(주)	경남 김해시 장** 금**로 **1번길 20				
35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2-15	답	97	97	국(국토교통부)	-				
36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 142-3	임	1	1	코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 **층 (대*동, ***빌딩)				
37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4-8	도	159	1	국(국토교통부)	-				
38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4-9	구	7	7	정*회	-				미등기
39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6-3	구	7	7	-	-	정*만	토지대장 소유자		미등기
40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6-4	구	3	3	정*만	-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 리		권리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6-8	도	473	48	국(국토교통부)	-				
42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6-9	도	11	11	국(국토교통부)	-				
43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7-2	도	106	106	이*곤	밀양군 **면 사* 리 2**				
44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7-3	도	45	45	이*곤	밀양군 **면 사* 리 2**				
45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7-4	장	1	1	코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 **층 (대*동, ***빌딩)				
46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7-5	전	103	103	국(국토교통부)	-				
47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7-9	도	1	1	코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 **층 (대*동, ***빌딩)				
48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17-10	도	51	51	국(국토교통부)	-				
49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20-2	도	136	18	송*원	김해읍 흥동리 6*9				
						송**봉	김해시 흥동 6*0				
						송**명	김해시 어방동 8*3				
						송*현	김해시 어방동 8*3				
						송**근	김해시 전하동 2*2				
						송**봉	김해시 삼계동 5*6				
						송**조	김해시 삼계동 1*7				
						송**일량	김해시 삼정동 1*7				
50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920-10	도	630	38	국(국토교통부)	-				
합계				3,519	1,999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8-2호(2018.1.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김해시 고시 제2020-53호(2020.3.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김해시 고시 제2024-293호(2024. 9. 12.)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1공구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6.

김 해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45(구산동)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면적 : 84,738.0㎡(전체 면적)
 - 금회 준공 면적 : 62,966.3㎡(1공구)

• 용도별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계	1공구(준공)	2공구	
합 계		84,738.0	62,966.3	21,771.7	100.0
주거 용지	소 계	40,227.0	24,966.0	15,261.0	47.5
	단독주택용지	24,966.0	24,966.0	-	29.5
	준주거시설용지	15,261.0	-	15,261.0	18.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42,334.0	37,693.3	4,640.7	49.9
	유수지(저류지)	2,010.0	2,010.0	-	2.4
	소공원	3,822.1	3,822.1	-	4.5
	완충녹지	10,486.8	10,486.8	-	12.3
	도 로	20,624.0	17,374.3	3,249.7	24.4
	보행자도로	1,727.8	1,727.8	-	2.0
	주차장	2,675.0	1,284.0	1,391.0	3.1
	수도공급설비(가압장)	255.0	255.0	-	0.3
	수도공급설비(배수지)	733.3	733.3	-	0.8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2,177.0	307.0	1,870.0	2.6
	공공용시설	1,870.0	-	1,870.0	2.2
	구거	307.0	307.0	-	0.4

5. 준공일자 : 2024년 9월 26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일반도로	폭 6~13.5m(소로, 중로)	노선 (면적:m ²)	15 (17,374.3)	본 시설물을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특수도로	폭 2~8m(보행자전용도로)	노선 (면적:m ²)	9 (1,727.8)	
	계		노선 (면적:m ²)	24 (19,102.1)	
공 원	소공원	개소 (면적:m ²)	1 (3,822.1)		
녹 지	완충녹지	개소 (면적:m ²)	10 (10,486.8)		
저 류 지	저류시설	개소 (면적:m ²)	1 (2,010.0)		
상 수 도	상수관 D80~150mm	m	2,686		
	제수밸브 등	개	159		
	소화전 100mm	개소	8		
	저수조 W8.0×L8.0×H5.0 제수변실 1.8×1.2 등	개소	1 35		
하 수 도	오수관 D150~300mm	m	1,907		
	우수관 D250~1,200mm	m	2,973		
	우수BOX 1.8×1.5×1런 외	m	257		
	맨홀(우수,오수)	개	169		
	우수받이 2호 U형측구 300C	개소 m	247 509		
전기시설	가로등 및 보행등	개	95		
	신호등	개	8		

7.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및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도시계획도로(대로3-1-13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7-172호('17.06.29.)로 최초 승인·고시되어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로3-1-13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대로3-1-13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김해시(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6일

김 해 시 장

1. 사업 개요(변경)

- 사업명 : 도시계획도로(대로3-1-13호선) 개설사업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524-14번지 일원
- 면적/규모 : 당초 7,100㎡(B=22.5m ~ 25.5m, L=213m)
변경 7,132㎡(B=22.5m ~ 25.5m, L=213m)
- 개발기간 : 2016년 ~ 2025년 5월 31일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73번길 15, 203호, 206호(내동, 경보더숲시티)
- 성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후 관

3.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세목(변경)-붙임

4. 실시계획 신청사유

- 실시설계 및 지적분할사항 반영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사정 후 개별 통지
- 보상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한 후 보상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위 감정평가업자 추천 조건에 미충족 될 경우 보상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합니다.

6. 열람공고 기간, 장소 및 열람 관계도서

- 열람기간 : 2024. 9. 26. ~ 2024. 10. 10.(14일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사무실
- 열람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 비치)

7. 보상계획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 제출내용 : 도시계획도로(대로3-1-13호선) 개설사업 관련

8.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854) 및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055-329-0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토지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7,923	47,894	7,100	7,132			
1	기정	대동면	덕산리	399-5	도	1,324	321	1,003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대동면	덕산리	399-9	도		1,003		1,003	한국농어촌공사	
2	기정	대동면	덕산리	403	도	18,298	17,403	880		국토교통부	
	변경	대동면	덕산리	403-1	도		895		895	국토교통부	
3	기정	대동면	덕산리	420-20	도	4,225	3,564	611		국토교통부	
	변경	대동면	덕산리	420-36	도		611		611	국토교통부	
4	기정	대동면	덕산리	422-20	도	4,869	3,797	1,053		국토교통부	
	변경	대동면	덕산리	422-49	도		1,072		1,072	국토교통부	
5	기정	대동면	덕산리	454-22	도	775	407	368		국토교통부	
	변경	대동면	덕산리	454-22	도		368		368	국토교통부	
6	기정	대동면	덕산리	454-30	답	1,003	923	81		이*희	
	변경	대동면	덕산리	454-63	답		80		80	이*희	
7	기정	대동면	덕산리	454-40	도	408	329	79		김해시	
	변경	대동면	덕산리	454-64	도		79		79	김해시	
8	기정	대동면	덕산리	524-6	답	382	247	136		박*포	
	변경	대동면	덕산리	524-71	답		135		135	박*포	
9	기정	대동면	덕산리	524-7	답	254	254	254	254	임*영외 1인	
10	기정	대동면	덕산리	524-8	답	109	62	47		임*영외 1인	
	변경	대동면	덕산리	524-72	답		47		47	임*영외 1인	
11	기정	대동면	덕산리	524-14	답	1,082	422	661		오*훈	
	변경	대동면	덕산리	524-73	답		660		660	오*훈	
12	기정	대동면	덕산리	524-29	답	533	533	533	533	김*순	
13	기정	대동면	덕산리	524-53	답	743	83	660		박*향	
	변경	대동면	덕산리	524-74	답		660		660	박*향	
14	기정	대동면	덕산리	524-57	도	368	325	62		김해시	
	변경	대동면	덕산리	524-75	도		43		43	김해시	
	변경	대동면	덕산리	524-76	도		21		21	김해시	
15	기정	대동면	덕산리	1116-13	도	13,268	12,751	518		농림축산부	
	변경	대동면	덕산리	1116-39	도		517		517	농림축산부	
16	기정	대동면	덕산리	1118-12	도	282	128	154		농림축산부	
	변경	대동면	덕산리	1118-16	도		154		154	농림축산부	